

6.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立法豫告

財務部公告 第1993-49號, 1993. 9. 2

1. 개정취지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노출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거래의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고, 세제상 자기자본에 의한 기업경영이 타인자본에 의한 경영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배당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부담을 완전조정하여 기업투자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

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며,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부 차이점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세 세율을 인하조정하고 기초공제 및 근로소득공제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함.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율		- 세율체계 조정		
~400만원 : 5%		~400만원 : 5%		
400~800만원 : 10%		400~800만원 : 9%		
800~1,600만원 : 20%		800~1,600만원 : 18%		
1,600~3,200만원 : 30%		1,600~3,200만원 : 27%		

현	행	개	정	(안)
3,200~6,400만원 : 40%		3,200~6,400만원 : 37%		
6,400만원초과 : 50%		6,400만원초과 : 47%		
-소득공제		-소득공제액 인상		
○기초공제 : 연60만원		○연 72만원		
○근로소득공제 : 연250~600만원		○연 270~620만원		
250~600만원		┌ 270만원이하 : 100% └ 270만원초과 : 30%		
┌ 250만원이하 : 100%				
	└ 250만원초과 : 3%			

나. 현재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의 3분의 1만을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18%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전액을 공제토록 하여 세제상 자기자본에 의한 기업경영이 타인자본에 의한 경영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배당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완전조정해 줌으로써 기업투자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에 의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함.

다.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접대비 기초금액을 현행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함.

라. 금융기관의 경우와 같이 지점별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각

지점에서 지급하는 이자·배당에 대하여 현재는 지점별로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본점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고 용인원수가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매월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도 분기에 한번씩만 신고·납부하면 되도록 원천징수 세액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 함.

마.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과점주주 소유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골프장업 등 법인의 주식, 점포임차권,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 자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함.

바. 경륜·경정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승자투표권의 환급금에 대하여도 승마투표권 환급금과 같이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사. 선수금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재고상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간주매출제도를 폐지하는 등 세무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점을 조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할 것)를 재무부장관(참조: 소득세 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